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6-211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시항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1월 1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

제1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(이하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, 선 원 및 낚시어선의 이용 승객(이하 "낚시승객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조(영업시간) ①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이라 한다)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레이다 및 야간항해 장비 설치 낚시어선

가. 하절기 (4월1일~10월31일) : 04:00~22:00

나. 동절기 (11월1일~익년 3월31일) : 05:00~20:00 단, 레이다 및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(해양수 산부 고시)에 적합한 3톤 이상 선내기 낚시어선은 가~나 호에도 불구하고 어선검사 증서 상 항해가능 시간을 적용한다.

2.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, 레이다 및 야간항해 장비 미설치 낚시어선 또는 어선검사증서상 야간항해금지 낚시어선 : 일출 30분전~일몰 30분후까지(기상청 발표 기준)

② 영업시간 내에서 야간영업을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 운항 허가를 받고 어선 내에 하우스 및 핸드레일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제1호 단서의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시간을 적용받는 낚시어선은 울산 광역시 어로 또는 항해제한·금지 고시에서 정한 시간 및 구역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어선장비 고장 및 기상악화 등에 따른 피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, 어업정보통신국과 관할 출입항 신고소에 사 전 유선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영업구역 제한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승객으 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, 낚시를 하는 장소에 안내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

2. 원자력안전법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, 항만법,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

관한 법률, 해사안전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출입 통제 또는 제한구역 ② 낚시어선업자는 간출암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(방파제 등)에 낚시승객을 안 내하여서는 아니 된다(단, 항만관리청이 친수시설로 개방하여 낚시어선에 의한 낚 시승객 수송을 허용한 시설은 예외로 한다).
③ 영업구역은 울산광역시 연안일원{(영해(領海)의 외측한계(外側限界)}으로 제한

한다. 영해의 외측한계 기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다.

제4조(야영금지) 낚시어선업자가 당해 낚시어선에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경우에 그 낚시승객이 야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유어질서 확립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) 낚시어선업자는 유어질서의 확립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면허어장에 뗏목 등 잡종선(널빤지, 합성수지 류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낚시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인명안전을 위한 장비착용) 인명안전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낚시승객은 구명조끼를 착 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승객을 안내할 경우에는 낚시승객과 상호연락체계(선주, 선원, 낚시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)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등 상황발생시 낚시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낚시승객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다음 호의 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하여야 한다.

1. 낚시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있어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 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2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는 인근 해양경비안전관서.경찰관서 또는 군부대.소방서 등에 인명 대피조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.

3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장비 사용법, 긴급상황 시 비상탈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승 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, 낚시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

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
⑤ 낚시어선업자는 V-PASS(어선위치발신장치)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,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. 단, 출입항신고기관(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 는 출장소)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⑥ 대행신고소 출입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까지 경찰관 상주 출입항 신고기관(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)에 전화 등 유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승선인원

및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낚시승객 준수사항) ① 낚시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있어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1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
2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3. 영업시간 외 항해, 영업구역 외 지역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
4.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절하는 행위②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.

③ 낚시승객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포획·채취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.군.구의 관할수역 내의 낚시장소에 낚시승객을 안내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.군수.구청장이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이 고시에 따른 영업시간 및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낚시어선 운항 및 낚시승객의 안전상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낚시어선업자, 선원 및 승객은 선내 주류(주세법상 정의 참조)를 반입하여서

는 아니 된다.

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(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5-204호)는 폐지한다.